

성차별, 연령차별 구인·구직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하는 여성단체 의견서

본회는 노동부와 공동으로 지난 7월 27일에서 8월 27일 한 달간 마포지역 생활정보지 중 임의로 ‘○○시장’을 선정, 구인·구직 광고 상 성차별 및 연령차별적인 내용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기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의견을 반영하여 더 이상 차별적인 내용의 광고가 대량 게재되지 않도록 요청 드립니다.

- 다 음 -

1. 특별히 성별을 제한해서 채용할 필요가 없는 데도 ‘여성’, ‘남성’을 표시한 광고가 1,275건에 이르고 있어, 시정이 요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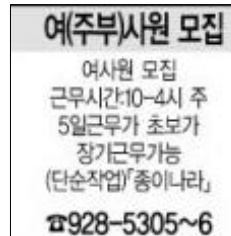
업무특성 상 반드시 특정성별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사업주들이 ‘여성’ 또는 ‘남성’을 제한하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가 ‘여성’을 광고에 명시한 경우는 1015건, ‘남성’을 명시한 경우는 260건으로 총 1,275건에 이릅니다.



<7/27-7/31일자>



<8/3-8/7일자>



<8/10-8/14일자>



<8/24-8/28일자>

위와 같이 ‘여성’, ‘사무직(여)’, ‘여사원’ 을 명시하는 행위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를 한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7조 (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귀 매체가 수익을 내는 것 외에도 성차별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사회적 책임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 등 고용조건을 달리하는 것도 성차별적인 광고입니다.

○○시장에서는 청소, 도우미, 생산직 등의 업무에서 남녀를 구분 없이 모집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여성의 임금을 낮게 정하고 있는 경우도 성차별적인 광고입니다.

남녀청소 50세이하여주90-100 남주100-110주5격주휴58세미만 여85~남95~경비주처보안90- 170「우정」 ☎761-2977 010-5555-2017	여경리사원 20-38세 초봉130 경 력자 월150 9사-오후7시 남직원 20-40세 월150 황학동「광동주 방」 ☎017-281-3544 2232-8883	남녀매장관리직원 급구 남녀매장관리직원 0명 구함 월4회휴무 남·월140~180만 /여·월120~140만 시간제가능 보광동기업은행영 「생활용품DC마트」 ☎790-3201 011-9060-4036	남녀생산직 구함 8시~오후7시 일요휴무 남35세미만 월130,여 45세미만 월120 교포,조선족사절 망원역「삼화식품」 ☎3142-9842
<7/27-7/31일자>	<8/3-8/7일자>	<8/17-8/21일자>	<8/24~8/27일자>

모니터링 기간 동안 총 42건의 광고에서 동일한 직종에서 남녀에 대해 임금을 달리 정하고 있었고, 혹은 여성은 경리직, 남성은 배달직과 같은 형식으로 성별로 직종을 구분하여 채용했습니다. 이러한 광고 내용 또한 성별로 임금을 달리 정하거나 해당 직종 내에서 임금을 달리 정할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구분

하여 채용 공고를 낸 것으로 확산되어서는 안 될 차별적인 광고입니다.

3. 광고상 연령을 명시하거나 제한을 하는 것도 연령차별 광고입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령을 이유로 한 모집, 채용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나이를 명시하여 채용하는 것은 그 연령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차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4조의4 (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경리구함 25세~30세 미혼자 월 130만 오후7사~새벽4시 월3회휴 무 남영동「한국권나이트」 ☎010-4715-4366(오후4시이후)	“남아르바이트 급구” 남아르바이트 00명 구함 23세~35세미만 성실하신분 조식,중식제공 신분증지참 8월3일~10월2일까지근무 을지로5가「중앙상회」 ☎2266-2079 2265-7096	광택기사 및 교육생(30~40대기준) 월250만보장 수도권10개지점 고소득월400~500만수입가 「천하출장」 ☎1600-1629	여직원 23-33세 사무직(주5일) 월 120만이상 4대보험 퇴직금유「조은봉투」 ☎832-3302
<7/27-7/31 일자>	<8/3~8/7 일자>	<8/17-8/21 일자>	<8/24-8/27 일자>

위와 같이 모니터링 기간 내 총 659건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한 연령을 정해 채용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인사권의 영역이지만, 성별이나 연령 등으로 채용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광고는 남

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해당 사업주 뿐 아니라 이런 광고가 지속적으로 게재되는 데에는 귀사 측에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는바 성차별, 연령차별 광고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가 성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큰 걸음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요청 드립니다.

- 1. 귀사가 광고 게재 요청을 받을 때 위와 같은 성차별, 연령차별 광고가 위법행위를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백 건에 이르는 성차별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귀사 차원의 규제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3. 성차별, 연령차별 광고를 장기적으로 없애, ○○시장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본 단체는 모집·채용 광고시장에서 ○○시장의 역할이 크리라 보고, 귀 매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2009년 11월 5일

한국여성민우회